



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수신자 :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 목 : 심사사례지침 제정 안내

1. 관련 근거

- 가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233호('19.10.25.) 「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」 제4조 제4항
- 나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4호('21.2.1. 시행) 「입원료 일반원칙」
- 다. 지침 제369호('22.6.13.) 「심사지침 설정 등에 관한 지침」 전부 개정

2. 위와 관련, 「외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입원한 사례」 등 2항목 5사례에 대한 심사사례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고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-182호, '23.7.1. 진료분부터 적용)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.

3. 아울러, 우리원 홈페이지(<http://www.hira.or.kr>) 「알림→공지사항」 및 요양기관 업무포털 (<http://biz.hira.or.kr>) 「심사기준 종합서비스→기타→공지사항」에 게재하였사오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(공고 제2023-182호, 2023.7.1) 「심사사례지침」 제정내역. 끝.

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


수신자 대한의사협회, 대한한의사협회, 대한병원협회

결재	담당 이경민	팀장 허은정	부장 권지은	실장	전결06/29 김미향
----	--------	--------	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

협조

시행 심사기준1부-1327 (2023.06.29.) 접수 ()
 우 2646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60(반곡동) / www.hira.or.kr
 전화 033-739-4714 전송 033-811-7397 / kkskm002@hira.or.kr / 비공개(5)